



20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6. 10. 17. (월) 제1차 본회의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기 획 감 사 실

-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주 민 복 지 과

-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총 무 과

-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출자 : 예천군수

1. 개정이유

-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민·형사상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으로 피소된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

- 소송비용 지원요건
 - 피소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
 - 불기소 처분, 무죄판결 확정 등 정당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된 것
- 지원범위 : 건당 1000만원 이내
- 지원시기 : 소송종결 후 지급
- 지원절차
 - 해당 부서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심의·결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 다. 예산현황 : 10,000천원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건당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고소·고발의 경우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된 것
3.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된 것
4. 민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것

③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부서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소송비용확정 결정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장이 소송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 건 실 적 부(제5조 관련)

부서명	의뢰일	문 의 내 용	회신일	회 신 내 용	자 문 번호사

【별지 제2호 서식】

직무관련 변호사 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직급 :			성명 :				
	담당업무								
사건번호	민사			고소·고발			공소		
	법원	접수일	사건번호	경찰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검찰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법원
지원금액		금 원		지원일시					
사건개요									
구비서류		☐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과·단·소장 □□□ (인) 예천군수 귀하									

표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u>제7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u> <u>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민사 또는</u> <u>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고문변호사</u> <u>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u> <u>선임한 경우 건당 1000만원 이내의</u> <u>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u> <u>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피소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u> <u>2. 고소·고발의 경우 불기소 처분</u> <u>(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된 것</u> <u>3.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u> <u>제325조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u> <u>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u> <u>또는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된 것</u> <u>4. 민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u> <u>중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것</u>

현행	개정안
	③ <u>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부서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u> <u>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u> <u>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 계산서 사본</u> <u>3. 소송비용확정 결정서</u> <u>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u> ④ <u>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장이 소송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u>

〈참고자료〉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

- 1건당 1000만원 이내 지원

- 인근 기시행 시·군 현황을 참고하여 연간 1건 미만 발생 예상

※ 도내 시·군 현황(6개 시·군 시행 중)

시·군	상주시	영천시	울진군	포항시	청도군	칠곡군
운영시기	2014 ~	2014 ~	2014 ~	2014 ~	2014 ~	2014 ~
실 적	-	1건	1건	-	-	-
예 산	-	1,800만원	2,000만원	-	3백만원	1,500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총 1,000만원으로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 기획감사실 행정9급 장은정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 “민원사무”라는 용어가 공무원의 내부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민원”으로 개정되는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 조문 및 용어 변경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 → 민원
- ※ 총 5개의 조례가 해당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기준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한다.

제2조(「예천군 공인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하고, “민원사무전용”을 “민원전용”으로 한다.

제3조(「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한다.

제4조(「예천군 건축 조례」의 개정)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한다.

제5조(「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단서 중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출자 : 예천군수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자활사업안내)」 사항을 반영하여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율을 인하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기금의 존속기한(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2)

다.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변경(안 제3조)

라.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자금 및 이율 등 조정(안 제8조)

- 대여자금 :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 자활기업당 7천만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5천만원
- 상환기간 :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 →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3년 균등분할
- 이율 : 연 5% → 연 2%, 연체이율 : 연 15% → 연 5%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2조,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보건복지부 지침(자활사업 안내)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예천군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업자금”을 “기금”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을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자수입금”를 “이자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를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라”로 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대여 및 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를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하고,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를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 내로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는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5%”를 “2%”로 하고, “15%”를 “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을 “제2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을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희망복지지원담당과 기초생활자활기금 업무담당”을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 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 생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예천군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생략)	제2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2. 금융회사등 ----- -----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3. 기금-----
4.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자활근로 -----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6. 그 밖의 수익금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조(사업의 범위) (생략)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생략)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제11조-----. ② ----- -----제34조제3항에 따라-----. ③ 제2조에 따라 -----.

현행	개정안
④ 군수는 기금 및 <u>이자수입금</u>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생략) 1. <u>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u> 2. <u>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u> 3. <u>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 사업실시기관</u> 4. <u>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u> 5. <u>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u> 제6조(지원신청) <u>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④ -----<u>이자수익금</u>----- 제5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 2. ----- <u>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u> 3. <u>영 제12조에 따른</u>----- 4. <u>영 제9조에 따른</u>----- 5. <u>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u>----- 제6조(지원신청) <u>제5조에 따라</u>----- <u>제3조에 따른</u>-----.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 -----제6조에 따라----- ----- ----- -----.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대여 및 상환)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 내로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는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 2%----- ----- ----- - 5%-----.

현행	개정안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u>자활공동체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u>제2항의 규정에</u>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2.(생략) 3. <u>제7조의 규정에 의한</u>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u>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u>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이차보전 대상은 <u>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u>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이차보전을 받는 <u>자활공동체가</u>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④ ----- <u>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이</u>----- -----<u>제2항에</u> <u>도</u> -----. 1.~2. (현행과 같음) 3. <u>제7조에 따라</u>----- ----- ----- <u>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u>----- ----- <u>제8조제3항에 따라</u> ----- ----- -----. ② <u>제1항에 따라</u>----- -----<u>자활기업</u>----- ----- --. ③ ----- <u>제1항에 따라</u> ----- <u>자활기업이</u> ----- -----.

현행	개정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⑤ (생략)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u>희망복지 지원담당과 기초생활자활기금 업무담당</u> 이 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 <u>희망복지지원 담당</u> -----.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폐지에 따른 융자 한도액을 설정하여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융자대상 변경(안 제3조)

- 당초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변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나.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폐지에 따른 융자 한도액을 설정(안 제4조)

- 당초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과 동일 수준
- 변경 : 1천만원 이하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9조
- 자활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를 “1천만원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에 규정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을 “제4조제2항에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 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 욕이 강한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u> 로 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에 한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 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 -----.
1.~ 5. (생략)	1.~ 5. (현행과 같음)
제4조(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u>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u>	제4조(융자금액 등) ----- -----1천만원 이 하로 한다.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 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라</u> ----- ----- ----- ----- ----- -----.

현행	개정안
제5조(신청절차) ① (생략)	제5조(신청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곧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
제6조(융자금 상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 ----- ----- ----- -----.
② 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 ----- ----- 제 4 조 제 2 항 에 도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9조(세입·세출) ①(생략)	제9조(세입·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2016.12.31.일자로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9조의2)

- 존속기한 : 2021. 12. 31.까지
- 존속기한 연장 :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개정조례안

- 불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과 같음
-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u>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재정비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2조의2)

- 존속기한 : 2021. 12. 31.까지
 - 존속기한 연장 :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위촉(안 제6조제4항)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u>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u> ①~③ (생략)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회예천군지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생략)	<u>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u>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u>1.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u> ⑤ (현행과 같음)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이에 대응하고 정부의 행정복지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명칭변경 지침에 따라 ‘예천읍사무소’를 ‘예천읍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당초 :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변경 : 예천군청·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나. 예천읍사무소 명칭 변경(안 별표)

- 예천읍사무소 ⇒ 예천읍행정복지센터

당 초			변 경		
【별표】 예천군청· <u>읍면사무소</u> 소재지(제2조 관련)			【별표】 예천군청· <u>읍행정복지센터</u> · <u>면사무소</u> 소재지(제2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할구역	명 칭	소 재 지	관할구역
-	-	-	-	-	-
<u>예천읍</u> <u>사무소</u>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9	예 천 읍 일 원	<u>예천읍</u> <u>행정복지</u> <u>센터</u>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9	예 천 읍 일 원
-	-	-	-	-	-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
(행정자치부-6427, 2016. 3. 18)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청·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한다.

②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각각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한다.

③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읍·면의 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한다.

④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한다.

⑤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예천읍사무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천읍행정복지센터”로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예천군청 · 읍행정복지센터 · 면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예 천 군 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 일원
<u>예천읍행정복지센터</u>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9	예천읍 일원
용문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54	용문면 일원
효자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481	효자면 일원
은풍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88	은풍면 일원
감천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389	감천면 일원
보문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27	보문면 일원
호명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	호명면 일원
유천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99-8	유천면 일원
용궁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1길 45	용궁면 일원
개포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길 28-8	개포면 일원
지보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26-5	지보면 일원
풍양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50	풍양면 일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u>	<u>예천군청 · 읍행정복지센터 · 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u>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29명 → 632명(+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19명 → 622명(+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변동없음)

나. 정원조정 주요 내역

1) 사회복지직 증원(2명) : 순 증 2명

(예천읍 : 7급 1명, 호명면 : 8급 1명)

2) 행정직 증원(1명) : 순 증 1명

(예천읍 : 9급 1명)

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 행	629	309	10	102	29	179
조 정	+3	-	-	-	-	+3
개 정	632	309	10	102	29	182

마. 직종 및 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구 분	계	4급	4급내지 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590	1	3	29	143	171	140	102	1
조 정	+3	-	-	-	-	+1	+1	+1	-
개 정	593	1	3	29	143	172	141	103	1

- 연구직 및 지도직 : 변동없음

3. 개정조례안

- 불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자치부-228, '14.12.08)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약 90,036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불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29명”을 “63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19명”을 “62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총	계	<u>632</u>	309	10	102	29	<u>23</u>	<u>159</u>
정 무 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 반 직	계	<u>593</u>	305	10	72	24	<u>23</u>	<u>159</u>
4	급	1	1	0	0	0	0	0
4 급 내 지 5 급		3	2	0	1	0	0	0
5	급	28	12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 또는 지도관		1	0	0	0	1	0	0
6 급 이 하		<u>559</u>	290	7	70	22	<u>22</u>	<u>148</u>
전 문 경 력 관 소 계		1	0	0	1	0	0	0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0	0	1	0	0	0
별 정 직 계		0	0	0	0	0	0	0
6 급 상 당 이 하		0	0	0	0	0	0	0
연 구 직 계		7	3	0	0	4	0	0
연 구 사		7	3	0	0	4	0	0
지 도 직 계		31	0	0	30	1	0	0
지 도 관		3	0	0	3	0	0	0
지 도 사		28	0	0	27	1	0	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629명</u> 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632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619명</u>	1. ----- : <u>622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비용

2. 정원조정 주요 내역

- 사회복지직 증원(2명) : 순증원 2명(예천읍 : 7급1명, 호명면 : 8급1명)
- 행정직 증원(1명) : 순증원 1명(예천읍 : 9급1명)

3.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 90,036천원

(단위:명/천원)

구 분	1인당 연간 총인건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합 계	90,036천원 (연간소요액)	
일반7급 1명 증	+34,908	2,909천원 x 12월 x 1명 (6호봉 기본급 2,092천원 / 각종수당 817천원)
일반8급 1명 증	+29,592	2,466천원 x 12월 x 1명 (4호봉 기본급 1,718천원 / 각종수당 748천원)
일반9급 1명 증	+25,536	2,128천원 x 12월 x 1명 (2호봉 기본급 1,409천원 / 각종수당 719천원)

4. 비용추계의 전제

- 1차년도는 2016년 인건비 지급현황을 기준으로 비용 반영
- 2차년도 이후는 2017년도 인건비 기준에 준하여 반영

5.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 인건비	45	91.8	93.6	95.4	97.2	423
	소계(b)	45	91.8	93.6	95.4	97.2	423
□ 총 비용(a-b)		-45	-91.8	-93.6	-95.4	-97.2	-423

※ 1차년도 6개월분 반영(공무원 평균보수인상율 3% 적용)

6. 재원조달 방안 - 90,036천 원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31.50	64.26	65.52	33.39	0	194.67
도비	일반회계	4.05	8.26	8.42	4.29	0	25.02
	특별회계						
	기금						
군비		9.45	19.28	19.66	57.72	97.20	203.31
민간							
기타							
합계		45.00	91.80	93.60	95.40	97.20	423.00

7. 부대의견 - 없음

8.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 안삼모(054-650-608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 : 45백만원

- 정원 순증에 따른 인건비 : 45백만원(6개월분 예상)

☐ 2차년도 이후 : 년 91.8백만원 예상('17년도 인건비 기준에 준하여 산출)